선원 협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추가모집공고안

- 조합명 : 선원 협산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추가모집신고 수리일 : 2022. 08. 03
- 선원 협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추가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청(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원협산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상(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산 96-1번지 일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사업진행 및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조합의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설립인가번호·인가일자 및 조합원수

지역주택조합	명 칭	선원협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정연정)
	소 재 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50, 4층 (화장동)
	고유번호	345-80-01845
	설립인가번호	2022-허가민원과-주택조합설립인가-2
	설립인가일자	2022년 6월 16일
	조합원수	186명

2. 업무대행사의 성명 및 주소

업무대행사	상 호	인강주택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조황기)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50, 3층 (화장동)
	등록번호	206211-0074050
	연 락 처	061-682-4568

3. 조합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대지면적

대지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산96-1번지 외 57필지				
건설 예정지 (선원동)	319-1	산132-1	313	301-1	산132-3
	산133	275	산96-1	산91	산99-3
	319-4	산134	산86-2	산90	832
	301	279	830-6	832-1	832-2
	832-3	산137-1	산133-1	산133-2	산133-3
	302	산86-1	291	산95-1	300
	산87	299	산89	281	282
	290	317	산96-2	산96	1187
	산86	832-4	산133-4	304	278-4
	303	산135	297	298	294-2
	산85	288-1	산93-2	산94-1	279-1
	289	283	284-2		
주택건설대지면적	69,659 ㎡		지목	전, 임, 대, 구거 등	

※상기 내용은 사업진행과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자료는 홍보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토지확보현황(사용권원 및 소유권) 및 계획

	구 분	면적(㎡)	백분율(%)	비 고
토지확보현황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 보	55,942	80.31%	
	미확보	13,717	19.69%	
	합 계	69,659	100%	

※국공유지는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시 80.31% 확보(소유권이전 17% 포함),
사업계획승인신청 전 95%이상 확보예정.
※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확보 현황은 홍보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구 분	비 고
주택건설예정 세대수	공동주택	312세대
	지하 1층, 지상 4층 (25개동)	
건설예정기간	착공 후 20개월	

6. 조합원 추가모집 세대수 및 모집기간

	구 분	세대수	추가모집세대수
조합원모집 세대수	84A Type	75	총 300세대 中 114세대
	84B Type	75	
	84C Type	75	
	84D Type	75	
조합원모집기간	2022. 08. 12 ~ 조합원 모집완료시까지		

- 상기 조합원 모집 세대수는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호당 또는 세대 당 주택공급면적

주택형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기타면적 (㎡)	계약면적 (㎡)
84A	84.5500	25.5522	110.1022	28.6979	138.8001
84B	84.5500	25.5522	110.1022	28.6979	138.8001
84C	84.5500	25.5522	110.1022	28.6979	138.8001
84D	84.5500	25.5522	110.1022	28.6979	138.8001

※상기 내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동수, 층수, 세대수, 용적률, 연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기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 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 및 측량성과 등의 사유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8. 부대시설 · 복리시설 등을 포함한 사업개요

구 분	내용		
대지위치	여수시 선원동 산95-1 외 57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준보전산지,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대지면적	공부상 면적 (1)	96,039.00 ㎡ (29,051.80평)	
	제척 면적 (2)	26,380.00 ㎡ (7,979.95평)	
	계획 면적 (1) - (2)	69,659.00 ㎡ (21,071.85평)	
주 용 도	공동주택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312세대 (25개동)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면적	13,100.59 ㎡		
건 폐 율	18.81 % (법정 : 20%)		
연 면 적	지하층	9,513.49 ㎡	2,877.83평
	지상층	33,792.14 ㎡	10,222.12평
	합계	43,305.63 ㎡	13,099.95평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33,792.14 ㎡	
용 적 률	48.51%(법정:100%)	사업용적률 : 62.17%	
최고높이	14.50m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해발 약 188m) 부지표면높이 (해발 약 80~90m)	
조경면적	10,750.00㎡ (15.43%)	법정 : 15%	
전 용 률	60.91%	공동주택 : 76.79%	
승 강 기	구분	법정기준	계획대수
	승객용	6층이상 거실면적의 합계가 3000㎡ 이하 1대 초과시 2000㎡ 마다 1대 가산 (160이상 2대)	13인승 40대
	비상용	높이 31m 넘는 각층 바닥면적 1500㎡ 이하 1대 초과시 3000㎡ 마다 1대 가산	해당없음

구 분	내용					
주차계획	구분		법정기준	법정주차대수	계획주차대수	주차비율
	공동주택	312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65㎡당 1대이상 세대당 1대이상	405.84	406	100.00%
	합 계			406	406	100.00%
비 고						

■ 시설별 면적표

구 분	전용면적		공유면적-1	공급면적		공유면적-2	계약면적		시설별비율
주차계획	㎡	평	㎡	㎡	평	㎡	㎡	평	
	26,379.60	7,979.83	7,972.30	34,351.90	10,391.45	8,953.73	43,305.63	13,099.95	100%
합 계	26,379.60	7,979.83	7,972.30	34,351.90	10,391.45	8,953.73	43,305.63	13,099.95	100%

비 고
※주민공동시설내 관리사무소 포함 (법정 : 23.1㎡, 계획 : 40m)
※주민공동시설
● 시설 : (30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의무설치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면적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5㎡ x 세대수 ▶ 2.5㎡ x 312세대 = 780㎡)

시 설	법 정	계 획	비 고
경로당	50㎡+312세대*0.1㎡ = 81.2㎡	90㎡ 이상	
어린이집	312세대*0.1인*4.29㎡ = 133.85㎡	150㎡ 이상	
어린이놀이터	200㎡+312세대*1㎡ = 512㎡	600㎡ 이상	
합계		840㎡ 이상	

9. 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 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주택법」제2조제 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구비 서류	① 인감증명서(일반용)7부	확약서 및 조합가입신청서 제출용 등
	② 주민등록등본 2부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③ 주민등록초본 2부	구 주소 표기 및 세대주 및 관계 등록상태표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④ 가족관계증명서 2부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공개
	⑤ 혼인관계증명서 2부	주민등록번호 공개
	⑥ 인감도장, 제출용 일반도장	조합원 가입자의 인감도장, 사용 인감용 일반도장
	⑦ 배우자 분리세대 - 배우자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번호 공개
	⑧ 배우자 분리세대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2부, 신분증사본	세대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⑨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⑩ 주택보유 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보유 시 계약서 사본 1부	주택보유여부 확인용
가입 신청 계약	조합원 가입신청 및 계약일시	2022. 08. 12. ~ 조합원 모집 완료시까지
	조합원 가입신청 및 계약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국제홍보관 BA-101

※상기 내용 이외의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규칙 제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제52조, 제53조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국토교통부의 주택 전산망 검색,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조합가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만이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0.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 장소 및 방법

발표일시	조합원 자격요건 유,무 결과에 따라 발표
발표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국제홍보관 BA-101 (여수시 박람회길1)
발표방법	개별 안내문자 및 서면 안내

- 조합원 당첨자 발표는 자격요건 유, 무 결과에 따라 발표됨.
- 조합원 자격 요건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검색, 제출서류 등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시 실시합니다.
- 이 중 최초 자격요건심사 시기인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조합원 적격자 판정을 받은 조합원을 당첨자로 확인하며, 조합원 부적격 받은 경우 소명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 조합원 당첨자로 확인합니다.
- 조합원 당첨자 발표는 조합원 개인에게 개별 안내 문자 및 서면으로 안내합니다.

11. 이중당첨자·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① 인·허가청으로부터 조합원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능하며, 부적격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조합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기타사유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조합원이 납부한 전체 분담금 중 조합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으로 납부한 전체 부담금의 10% 및 업무대행비(₩22,000,000/VAT포함) 및 연체료, 중도금대출이자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해당 조합원의 통장계좌로 환불하여 처리하며,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총회의 의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는 사업완료시점(입주)까지 조합원자격(무주택, 세대주)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소명기간 내(인·허가청 부적격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⑤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조합원은 조합원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해당조합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합규약 및 조합원 계약서에 의거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단, 조합은 해당조합원이 납부한 전체 부담금 중 조합의 손해에 대한 위약금으로 납부할 전체 분담금의 10% 및 업무대행비(₩22,000,000/VAT포함) 및 연체료, 중도금대출이자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해당조합원의 통장계좌로 환불처리하며, 환불시기는 총회의 의결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조합원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조합원 부담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부적합한 전매행위 등으로 주택공급 질서에 어지럽게 하는 행위가 발견된 경우
4) 조합원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5) 조합원이 조합에서 진행하는 조합사업의 공동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조합원이 조합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이권개입, 청탁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7) 조합 또는 시공사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조합 또는 시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8) 기타 조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계약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협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 조합원 가입 신청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자격상실, 관할관청의 조합인가 신청 시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10) 조합원 사망 또는 인·허가권자가 인정하지 않은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탈퇴한 것으로 보고 제명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그 상속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으며, 부담금을 기일 내에 성실히 납입하고 조합규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11) 당 사업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업진행에 방해 등 협의가 인정될 때
12) 상기 10)내용에 대해 조합원은 조합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⑥ 조합원의 사정에 의해 자진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는 15일 전에 조합에 탈퇴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조합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탈퇴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주택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은 코리아신탁(주) 단독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예치하고,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철 회의 의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조합"은 청약철회의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코리아신탁(주)의 장에게 가입비 반환을 요청하고 코리아신탁(주)의 장은 가입자가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조합"은 가입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주택법 제11조의6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⑦ 해약 및 탈퇴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 환급계좌에 이체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조합원의 환불금은 조합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 처리됩니다.
⑧ 상기 ②,④,⑤,⑦항에 의해 조합원계약이 해지 될 경우 해당 조합원 부담금 총액의 10% 및 업무대행비(₩22,000,000/VAT포함)는 위약금으로 조합에 귀속되며, 연체료, 중도금 및 중도금대출이자 등을 공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환불함에 대하여 해당조합원은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⑨ 조합원은 조합이 추진하는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수 감소로 인하여 부득불 조합원의 감원을 필요로 할 경우 조합이 정한 탈퇴방식(추첨 등)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해당 조합원은 탈퇴처리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해당조합원은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가입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위약금 없이 전액환불하며, 지급시기는 탈퇴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해당조합원은 납부원금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조합 및 시공사, 조합업무대행사에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⑩ 조합은 탈퇴 및 제명된 조합원 세대 및 잔여 세대분의 대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체 조합원을 충원 또는 모집 할 수 있습니다.
⑪ 조합은 조합원이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여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본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 발생시 중도금 대출 원리금을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실행을 한 금융기관에 직접 환급 처리하고, 중도금 대출 원리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변제할 때까지 해당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주택조합 신청 철회 및 신청금 반환은 주택법 제11조6에 따르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 후 신청금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12.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 조합원 부담금 및 납부 일정표

<단위:천원>

주택형	타입 구분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			중도금(50%)					잔 금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5차	
			가입시	가입 후 10일 이내	가입 후 90일 이내	지정일	지정일	지정일	지정일	지정일	입주 지정일
84A	1층	436,122,860	10,000,000	35,000,000	45,000,000	43,612,000	43,612,000	43,612,000	43,612,000	43,612,000	128,062,860
84B	2층	395,874,860	10,000,000	29,587,000	39,587,000	39,587,000	39,587,000	39,587,000	39,587,000	39,587,000	118,765,860
84C	3층	419,252,240	10,000,000	35,000,000	45,000,000	41,925,000	41,925,000	41,925,000	41,925,000	41,925,000	119,627,240
84D	4층	452,792,240	10,000,000	35,000,000	45,000,000	45,279,000	45,279,000	45,279,000	45,279,000	45,279,00	136,397,240

업무추진비 : 2,200만원 (VAT포함. 계약 시 납부) 상기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음.

※중도급 납부 일자가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합니다.
※중도금 납부 일자는 중도금 대출은행선정 및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분담금 및 일정표는 사업진행 및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있습니다. (금액 변경 시 개별정산 예정)
※상기 분담금은 업무대행비가 별도 표기된 금액입니다.
※상기 분담금은 개별 분담금이 제외된 금액이며, 소유권이전 등기비,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 포함),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공과금(보존등기비 등)은 조합원 개별부담입니다.
※상기 분담금은 사업계획승인 시 별도로 부과되는 조건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공원, 완충녹지 조성공사비, 기타 기반시설 조성비 등), 관계법령의 변경 및 강화된 건축기준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 각종 부담금, 조합의 요청 또는 합의에 의해 추가 되는 시설의 부담금 등은 제외된 금액이며, 발생 시 별도 일괄 부담(징수)하여 처리합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분담금 중 중도금(50%)에 대한 은행권 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는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한다.
※ 발코니 확장비용(1,600만원 VAT포함)을 제외한 금액이다.
※상기 중도금(50%)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실행하지 않는 조합원과 은행권 대출 부적격(개인 신용등급 및 대출금융기관의 규정)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조합원의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현금으로 지정계좌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13. 조합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자금관리주체	코리아신탁㈜ 대표이사 : 백인균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자금관리계획	코리아신탁과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체결 후 자금일체를 신탁사에서 관리

※위 부동산신탁회사의 자금관리계좌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원을 수납하지 않으며, 자금관리계좌로만 수납하고 그 외의 입금 모두는 무효임

14. 조합원 분담금, 업무대행비 계좌 및 납부방법
- 조합가입시 1차 분담금(가입 시+가입 후 10일 이내)을 조합원가입신청금 계좌로 납부하시고 2차 분담금(계약금)은 90일이내 조합원분담금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입기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휴대폰 문자 메시지 통보 및 15일 전에 조합 게시판(홈페이지, 카페 등)에 통보 합니다.
- 납입기일 경과 후에는 그 경과일수에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업무대행비 포함)은 연 15%의 연체요율 적용, 중도금은 추후 공급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합니다.
- 지정된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계좌 이외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조합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입금자란 표시내용
조합원 가입신청금	농협	301-0292-0667-11	코리아신탁(주)	계약자 성명
업무 대행비	농협	301-0292-0671-31	코리아신탁(주)	계약자 성명
조합원 분담금	농협	301-0292-0649-91	코리아신탁(주)	계약자 성명

15. 동·호수 배정의 시기 및 방법

배정 시기	동·호수 배정시기는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 총회에서 협의 후 안내
배정 방법	추후 공지되는 장소에서 당첨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

- 단, 추후 인허가 변경에 따라 동·호수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호수 및 배치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확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16. 조합설립인가일, 사업계획승인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 예정일

구 분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공사착공 예정일	입주예정일
일 자	2022.06. 16	2022. 12	2023. 05	2024. 12

※상기 예정일은 사업진행 및 인·허가과정,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조합원 가입시 권리 · 의무 사항	- 사업계획으로 정한 조합주택 1세대 공급권리 - 조합원 분담금 및 제세공과금(보존등기비 등) 개별 납부 의무 - 임원 선출권 및 피선출권 행사 권리 -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 1) 조합의 의결권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유고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권한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이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합원 분담금(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사업비, 각종용역비 등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하는 일체의 금액)의 납부 및 조합 가입계약서, 조합 총회 등에서 정한 금액 등의 납부 의무.

18. 그 밖에 추가 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
-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은 추후 관련법규 개정, 사업 인·허가, 설계 변경, 시공사 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009년 04월 0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상기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비, 통합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조합원 개별분담금)이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 시공사 선정 및 도급계약 전 협의 및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도면, 구조,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종 인·허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단지 주변도로의 교통체계 및 동선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 당 공급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에 의해 등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팜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조감도 및 단위세대평면도 등은 개략적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배치 구조 등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여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이 노출되어 있고,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 계획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조합 및 시공사의 동의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계획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따른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조합 및 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며,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선원협산지역주택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은 조합원 가입자가 기 납부한 분담금의 원금 전액(업무대행비 제외)을 보장하고 조합원 가입자는 기 납부한 분담금 원금 전액(업무대행비 제외) 이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요구 및 청구 할 수 없으며 조합 및 시공사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관 위치 및 신청 장소

신청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국제홍보관 BA-101
모집문의	061)663-7100

선원 협산 지역주택조합